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41 발의연월일: 2020. 9. 18.

발 의 자:소병훈·전혜숙·임종성

남인순・송재호・인재근

서영석ㆍ허 영ㆍ임호선

이원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, 현행법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으로 성장관리방 안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음.

이에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,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관리방안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넘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성장관리계획의 정의를 규정하여 제도개념을 명확히 함(안 제2조 제5호의3 신설).
- 나.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중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 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결정 전에 다시 공고·열 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(안 제28조).
- 다.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에 일정 기간 내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(안 제54조).
- 라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5조의2 신설).
- 마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 도록 함(안 제75조의3제1항 신설).
- 바.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정함(안 제75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).
- 사.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도록 함(안 제75조의4 신설).

아.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대상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지 않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를 추가함(안 제13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7호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3. "성장관리계획"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. 제2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·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1.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·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 자 하는 경우
- 2. 제30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,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시·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

제54조 본문 중 "건축물"을 "건축물(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
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)"로 한다.

제58조의 제목 "(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)"을 "(개발행위허가의 기준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"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"을 "성장관리계획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 제59조제2항제2호 중 "성장관리방안"을 "성장관리계획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제4호"를 "제2호, 제4호"로 한다.

제5장제3절(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절 성장관리계획

- 제75조의2(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 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, 관리지역, 농 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 - 1.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
 - 2.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
 - 3.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
 - 4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·지구등의 변경 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

- 5.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 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,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④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⑤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

8조에 따른다.

- ⑥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5조의3(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 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1. 도로,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
 - 2. 건축물의 용도제한,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
 - 3. 건축물의 배치, 형태, 색채 및 높이
 - 4.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
 - 5.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· 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- 1. 계획관리지역: 50퍼센트 이하
 - 2. 생산관리지역·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: 30퍼센 트 이하
 -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

고 해당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- ④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7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성장관리계획구역"은 "성장관리계획"으로 본다.
- ⑤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 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.
- ⑥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5조의4(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)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 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 여야 한다.

제77조제5항을 삭제한다.

제78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계획관리지역: 100퍼센트 이하

제133조제1항에 제5호의3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5의3.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 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7의3. 제75조의4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3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적용례) ① 제133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행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.
 - ② 제133조제1항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성장관리방안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본다.
 -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은 제75 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으로 본다.
-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별표 중 연번 제52호 근거 법률란 중 "제58조"를 "제75조의2"로 하고, 지역·지구등의 명칭란 중 "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"을 "성장관리계획

구역"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5의2. (생 략)	1. ~ 5의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의3. "성장관리계획"이란 성장
	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 발
	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
	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
	획을 말한다.
6. ~ 20. (생 략)	6. ~ 20. (현행과 같음)
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	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
청취) ① ~ ⑦ (생 략)	청취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⑧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</u>
	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
	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	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
	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
	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
	시 공고 •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
	의견을 들어야 한다.
	1.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
	<u>견을</u> 도시·군관리계획안에
	<u>반영하고자 하는 경우</u>
	2. 제30조제1항·제2항에 따른
	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

제54조(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| 제54조(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)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 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 다. 다만,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

제58조(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)

-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 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 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.
 - 1. (생략)
 - 2. 도시·군관리계획 및 제4항 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

<u>및</u>	같은	- 조	제3형	}에	따른	를 중	<u>-</u> 아
<u>도</u>	시계	획위	원회	심으	의,	시 •	도
도	시계	획위	원회	심으] 5	드는	시
•	도에	두는	: 건축	축위	원호	티와	도
시	계획	위원	회의	공등	동	심의	에
<u>서</u>	제	시된	의견	1을	반	영ゔ	너
<u>도</u>	시 •	군관	리계	획을	결	정히	<u> 고</u>
<u>자</u>	하는	- 경	우				

	건	축	Ţ	들)	_							
	<u>건</u>	축	물((일)	정	フ] :	간_	내	철	거.	가	예
	<u>상</u>	되	는	경	우	Ę	<u>=</u>	대부	통광	병령	<u>0</u>	로
	<u>정</u>	하-	는	가-	설	건충	두물	-은	제	외	한1	구)
			_									
						. _ _						
제							 フ	-의	ヹ	쥬	.)	(1)
''												
	1	/ -	 -) =1		- -		`					•
	1	10	니 이	ゖ゙ゖ		<u>r</u> —	-)					

- 리계획-----

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. ~ 5. (생략)

- ②·③ (생 략)
- 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 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 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, 건축물 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(이 하 "성장관리방안"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- ⑤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 <삭 제> 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 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 어야 하며,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

3. ~ 5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니하다.

⑥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
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
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
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
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
류를 송부하여야 하며,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
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
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9조(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) ① (생 략)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.
- 1. (생략)
- 2. 지구단위계획 또는 <u>성장관리</u> <u>방안</u>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
- 3. ~ 7. (생 략)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

<u><삭 제></u>

제59조(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
위원회의 심의) ① (현행과 같
<u>ㅇ</u>)
②
,
1. (현행과 같음)
2 <u>성장관리</u>
계획
3. ~ 7. (현행과 같음)
③

----- 제2호, 제4호 ----

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·군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•
•

제3절 성장관리계획 제75조의2(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 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 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 및 자연 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 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

- 1.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

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

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
- 2.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

다.

- 3.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
- 4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 2조제1호에 따른 지역·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
- 5.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 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역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
 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
 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 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 0일 이내에 특별시장·광역시

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 을 제시하여야 하며, 그 기한까 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④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 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 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 또는 군 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 다.

⑤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
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
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
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한
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
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
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
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
관하여는 「토지이용규제 기본
법」 제8조에 따른다.

⑥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의

<신 설>

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75조의3(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1. 도로,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 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
 - 2. 건축물의 용도제한, 건축물의

 건폐율 또는 용적률
 - 3. 건축물의 배치, 형태, 색채 및 높이
 - 4.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
 - 5.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

 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 항
 -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 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

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 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 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- 1. 계획관리지역: 50퍼센트 이하
 2. 생산관리지역·농림지역 및
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
 역: 30퍼센트 이하
-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5퍼센트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특별자치도 ·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- ④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75조의2제2 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성장관리계획 구역"은 "성장관리계획"으로 본다.

<신 설>

④ (생략)

⑤ 계획관리지역·생산관리지 <삭 제> 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 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 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특별시・광역시・특별자치

⑤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 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 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 된 성장관리계획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 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 야 한다.

⑥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의 수 립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제75조의4(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의 건축 등) 성장관리계획구역 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 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.

제77조(용도지역의 건폐율) ① ~ | 제77조(용도지역의 건폐율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시・특별자치도・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8조(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) 제7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.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 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특 별자치도 ·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다.

- 1. (생략)
- 2. 관리지역

가. • 나. (생 략)

다. 계획관리지역: 100퍼센트 이하. 다만, 성장관리방안 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- 3. 4. (생략)
- ② ~ ⑥ (생 략)

제133조(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| 제133조(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 처분) ① ------

세78조(용도지역에서의	용적률)
①	
4 (=1 =1 -1 -1 -1 -1 -1	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----

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계획관리지역: 100퍼센트 이하

- 3. 4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·인가 등의 취소, 공사의 중지,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 전,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 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1. ~ 5의2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6. ~ 7의2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8. ~ 22. (생략)

②·③ (생 략)

·.	
·.	
,	
•	
	•

- 1. ~ 5의2. (현행과 같음)
- 5의3.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 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
- 6. ~ 7의2. (현행과 같음)
- 7의3. 제75조의4에 따른 성장관리 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 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개발행 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
- 8. ~ 22. (현행과 같음)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